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49

발의연월일: 2024. 7. 31.

발 의 자:임미애·문금주·서삼석

송옥주 • 어기구 • 오세희

윤준병 • 이광희 • 이병진

이원택・임호선・조 국

주철현 · 채현일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개사육농장을 경영하는 농장주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폐업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이에 관한 조세특례 규정이 없음.

그러나 개사육농장주의 폐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폐업지원금 등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사육농장주가 지급받은 지원금, 시설물잔존가액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4 조의34 신설).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3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34(개사육농장주가 지급받은 폐업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장주가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
시설물잔존가액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
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사육농장주가 지급받은 폐업지원금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원금, 시설물잔 존가액을 지급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04조의34(개사육농장주가 지
	급받은 폐업지원금에 대한 비
	과세) 「개의 식용 목적의 사
	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장주가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지원금, 시설물잔
	존가액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